



지식재산권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하 흥 준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급

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의 흐름에 발 맞추기 위해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흐름에 뒤쳐지게 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정체되고, 실업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도 점차로 악화될 것이 예상된다.

21세기는 정보나 지식에 의해 커다란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지혜의 시대’라고 한다. 지식의 창조, 권리의 보호와 활용, 나아가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이다.

지식재산을 창출해내는 것은 인간이다. 창조적인 인재의 육성이 요청되고 있으며, 학생·사회인을 포함하여, 지식재산을 창출해내는 인재를 널리 육성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과 교육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경우 2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첫째,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행하는 면, 둘째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면이다.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대학전략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이는 결코

대학 등의 고등교육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포함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가 21세기에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학·과학교육의 질·양적으로도 충실을 기하고,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산업발전에 긴급과제이다. 지식재산 교육에 대해서는 대학에서의 교육, 기업에서의 출원실무 또는 연구개발현장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IT, BT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진국의 자국 기술보호 강화와 지식재산권 통상무기화가 국제적으로 지배적인 현상이 되었다.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에 따라, 이러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국내산업도 기술개발 및 지재권 보호 강화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국제적·국내적 중요성의 증대는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인 산업체재산권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지식재산

권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확충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현재 변리사업계에서는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리권 부여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리사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변리사의 영역확대의 문제도 연수 등을 통한 변리사업계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될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 영역의 확대에 따른 변리업계의 인력 수요의 증대와 산업재산권 연구, 개발 인력의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체, 변리업계, 연구소 등의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와 산업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한 제도는 질적으로 너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그나마 있는 제도 또한 교육시행기관 등에 대한 통제기능이 없어 실효성 있는 체계적 교육을 하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 교육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학교육의 활성화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법률수요는 세계각국의 법규법, 법문화 및 법제도를 필연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첨단분야의 관련법령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의 새로운 법률수요에 대한 공급자로서의 지식재산권에 특성화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첫째, 21세기의 국제적, 국내적 산업재산권 관련 수요를 예측하여 양적, 질적 측면에서

다양하고 깊이있는 교과과목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전문법조인 또는 변리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적지식 및 윤리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교과과목이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법학교육과 법조교육의 일원화를 지향하고, 다른 학문분야를 전문영역별로 특화, 연계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교과목의 질적 심화 및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교과과목의 개발 및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임교수가 일정수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가에 의한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임교수제도의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2. 변리사 등의 지식재산권 전문가에 대한 연수기능의 강화

업무 부분에 대한 영역확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존변리사에게 최소한 필요한 지식·응용 능력은 변리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현재 임의로 되어 있는 연수 등에 대해 의무연수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의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고도한 연수, 민간연수에 위임되어 있어 있지만 필요한 인재를 조속히 양성하는 것이 곤란한 분야의 연수, 국가 기관에서 직원과 공동으로 연수를 실시하여야 국가의 공무원이나 변리사 양자의 자질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연수 등에 관해서는 국가의 연수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민간 교육 전문기관의 육성

민간 지재권 교육 전문기관을 육성하여 향후 민간운동으로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장기적인 교육의 홍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재산권에 대한 연수 등의 교육사업은 각 민간단체 등에서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의 지원 등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에게 직접 수강료 등을 징수하게 되며, 이는 범국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홍보 및 교육사업에 대한 차질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규정이나 기관이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대국민 지재권 인식제고 및 청소년 발명가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아카데미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민간자격증 제도의 활성화(발명평가인력, 특허정보 분석, 종합적 특허실무 관리인력 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교육 및 연수에 대한 유인책 시행

① 의의

지식재산권 연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자발적인 교육 및 연수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유인책이 필요하며, 특히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 및 연수와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에 의한 교육의 경우에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세제지원

i)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 교육용역 기관의 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되는 교육기관도 정부의 허가 등에 의한 비영리 교육기관 등의 지정이 필요하다.

ii) 조세감면 혜택

제조업 등이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술개발비, 기술개발용역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제9조에 의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 경감 차원에서 효과가 매우 높음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되는 담당업무의 취급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비용 등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iii) 직업훈련 분담금 납부 공제 혜택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노동부 고시95-61호 비용기준에 근거하여 직업훈련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직업훈련 분담금 의무 납부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관련 교육기관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③ 연수 및 교육 참가자에 대한 메리트 부여

연수 및 교육참가자에 대해서는 각종 메리트를 부여함으로써 연수 및 교육에 대한 경영층의 인식 제고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의 방법으로는 승진에서의 가산점 부여방법 등을 통한 연수 및 교육 참가자에 대한 메리트의 방법과 연수 및 교육 참가의 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한 우수특허관리업체 선정 심사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법 등의 경영층 및 회사에 대한 메리트의 부여 방법이 있을 것이다.

5. 국가 역할의 강화

① 의의

국가에서는 이상의 민간 연구기관 등이 커버할 수 없는 분야에서 인재육성을 보완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2년 3월에 책정된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5년간 총액 24조円의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중점분야에서 수많은 라이프사이언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가지는 변리사의 현저한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에 근거한 다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첨단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그 성과가 적절히 보호되지 못

하면 국민의 손실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의 변리사의 양성, 전문성 강화를 정책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

또 기초기술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보다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기대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성과를 적절히 특허권화함과 동시에 그 실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대학·공공연구기관(국공사립대학 포함)의 기술이전전담조직(기술이전촉진법 제9조, 이하 '기술이전전담조직'이라 한다)²⁾의 지식재산권관리자의 충실 및 연구자의 지식재산 마인드의 향상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제도의 보급, 개발에 관해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식재산분쟁의 해결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 소송, 재판외분쟁처리 등이 일률적으로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인적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분야의 법조의 전문성강화, 침해소송 등과 연계되는 변리사의 실무능력의 향상, 관계행정기관직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보급, 각기업체에서의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자에 대한 업무 능력의 향상 등의 면에서 필요한 연수의 실시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② 국가가 실시·지원해야 할 연수

첨단기술분야 중 변리사의 현저한 부족이 지적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 분야의 변리사의 증강을 위해 내실있는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또 지식재산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서 법조의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내실

1) 일본특허청, これから知的財産分野の研修のあり方を考える懇談會報告書, 2001.6.18., 19면 이하.

2) 일본의 경우에는 TLO(대학등기술이전기관, 현재 28개 기관이 있다)가 있다.



있는 연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첨단기술분야에 대해서 금후 발생할 연구 개발성과의 적절한 보호와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구자·학생의 지식재산 마인드의 향상, 대학·기술이전전담조직의 스텝에의 전문적 지식의 보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i) 첨단기술분야의 학생에 대한 연수

첨단기술분야의 학생은 연구자를 배출하고, 또 장래의 변리사, 변호사, 대학·기술이전전담조직의 지식재산관리자로 되는 인재이므로 지식재산 마인드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종래부터 전국 각지의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세미나를 첨단기술분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학에 의한 지식재산강좌의 개설 등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ii) 연구자, 대학·기술이전전담조직에 대한 지식 재산 마인드의 향상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일본으로서 중점적으로 연구개발에 포함해야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자의 지식재산 마인드의 향상이나 대학·기술이전전담조직의 스텝의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전문성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 계속해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별록 2003/ 7

